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56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강경숙·신장식·황운하
백선희·최혁진·김준형
김재원·정춘생·차규근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등학교”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유아 과잉교습의 제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습행위(이하 “과잉교습”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하여 학교교과를 교습하는 행위
2. 3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을 결합하여 학교교과를 하루 40분 이상 교습하는 행위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잉교습을 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잉교습을 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과잉교습을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외교습”이란 <u>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u>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영유아 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와 <u>초등학교</u> ----- ----- ----- ----- -----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2조의2(영유아 과잉교습의 제한)</u>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습행위(이하 “과잉교습”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
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
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1.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
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
제화의 목적을 결합하여 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행위

2. 3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대
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중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
제화의 목적을 결합하여 학교
교과를 하루 40분 이상 교습
하는 행위

제17조(행정처분)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영
유아를 대상으로 과잉교습을
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②

제1호의2

③ _____

_____. 제1호의2

_____.

2.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